

『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
일괄개정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1월 26일

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기획예산담당관 박 영 일

나. 제안이유

- 붙여쓰기 되어 있는 제명의 띄어쓰기 및 상위법에 위반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적법하고 알기 쉬운 조례를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명 띄어쓰기 반영(안 제1장 : 안 제1조 ~ 안 제34조)
-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개정(안 제2장)
 -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개정(안 제35조, 안 제36조)
 -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원칙 개정(안 제37조)
 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3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,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속

○ 본 『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』은

- 붙여쓰기 되어 알아보기 힘든 제명의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불부합되는 규정 및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제명 및 조문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이의신청 기간 등 상위법령에 불부합 되는 사항,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제명, 관련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적법하고 알기 쉬운 조례를 제공하여 편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